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520-10

규제혁신·정부혁신·국세행정역량강화TF·적극행정

2025 최고 경영자의 현명한 세무관리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알려주는 알짜 세무정보

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을까?

가업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www.nts.go.kr

최고 경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시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소중한 세금은 대한민국의 안보, 치안, 교육, 복지 등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민생경제 회복 및 활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운영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정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양자·다자간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최고 경영자의 현명한 세무관리」 책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제혜택, 세무관련 정보, 세법 개정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기업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2025. 3.

국 세 청 장

국세청
www.nts.go.kr

차례

CHAPTER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01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002
0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 003
0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 004

CHAPTER 2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01 법인세 ····· 008
02 부가가치세 ····· 010
03 종합부동산세 ····· 011
04 주식등 양도와 세금 ····· 012
05 원천징수하는 세금 ····· 016
06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 017
07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019

CHAPTER 3 기업경영과 세무

01 절세와 탈세 ····· 022
02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023
03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 024

04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025
05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 026
06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 027
☑ 납부기한 등의 연장 ····· 027
☑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028
☑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 030
☑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 031
07 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 035
08 대손금의 세무처리 ····· 037
0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 039
10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041
1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042
1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044
13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046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047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049
16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 050

CHAPTER 4 가업상속공제제도

01 가업상속공제제도 ····· 054
0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057
03 가업승계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 060
04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 061

국세청
www.nts.go.kr

CHAPTER 5

세정지원

01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 ····· 064
02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 065
03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066
0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067
05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068

CHAPTER 6

주요 세법 개정내용

01 법인세 세율 인하 ····· 070
0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 070
03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 071
04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 071
05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 ····· 072
06 법인세 중간예납 적용제외 법인 기준 ····· 072
07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 073
08 연결법인 간 결손금 정산 예외 요건 완화 ····· 073
0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대상 확대 ····· 074
10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 074
11 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정 ····· 075
12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 075
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076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077
15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정비 ····· 077
16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 078

2025 최고 경영자의 현명한 세무관리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1.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1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

○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현금 중심 체납정리, 고액 불복 중점 대응 등 국세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

재난·재해 피해지역에 세심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세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성장지원, 해외진출기업 지원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시스템 개발, AI상담 본격 시행 등 시스템 혁신과 과학세정 정착으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 등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의 바탕이 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면서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악의적 탈세와 체납은 근절하여 민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추진기반 마련

경정청구 자동처리 등으로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전개하고,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해 직원 동기부여 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와 직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일선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달 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축소하여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을 위한 「세무지원 소통의 달」 운영

-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소통을 활성화 하고, 매 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납세자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청년·중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지원을 활성화하여,
  -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 신고·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서비스 세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고내용 확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한 신고수준 향상과 신고 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사전지원' 본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는 경제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면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운영 방향

-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하되,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있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 세무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유형]

유 형	선정 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순환조사	•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중 선정	•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중 선정
장기미조사	• 미조사 사업연도 수가 일정 기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중 선정	
성실도	• 성실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유형]

선정 사유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기업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 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의 기업인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준법세정 정착을 위해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에 따라 조사팀 교체 등 납세자권리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하시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 최고 경영자의 현명한 세무관리

II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종합부동산세
4. 주식등 양도와 세금
5. 원천징수하는 세금
6.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7.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1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1회계기간)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	×	×
외국법인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	×	×
국가·지자체		• 납세의무 없음			

*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몰로 종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로 신설하였습니다.('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국내에 소재하는 일정 요건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 적용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세 전자신고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인 4.30.(중소기업은 5.31.)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예시)

구분	납부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	납부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분납할 수 있는 세액	7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6개월)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6개월)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매출액 X 10%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 의제 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공통매입 면세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 각종 가산세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주택	인별합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80억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9억원) 적용 제외('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연령별·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80%)

- 연령별 세액공제 : 60세이상 20%, 65세이상 30%, 70세이상 4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매년 12. 1.부터 12. 15.까지입니다.

-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주식등 양도와 세금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내주식등)

구분		과세 대상
상장주식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 비상장법인의 주식(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트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기타자산	특정주식	•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이상인 주식발행법인의 •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한 경우 포함('19.1.1. 이후)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시설물이용권 부여주식	• 배타적 이용이나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제외 및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으로 손익통산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국내주식과 합산하여 적용('20.1.1.이후 양도분부터)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 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소득세법 제 118조의2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
- 국외 기타자산(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시설물이용권부여주식)

세율

구분			세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6~45%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5%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 외)'18.1.1.이후 (중소기업) '20.1.1.이후('19.12.31.이전 20%)

대주주 범위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세울 적용시 대주주 요건]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24.1.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1.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예정신고 기한

구분	신고기한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	예정신고 면제(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 대상 (신고기간 :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5.31.)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 등 포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

증여세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와 같이 한 번의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2002-두-12458(2003.5.13.)참고)

또한 증여세는 주식거래 형태가 양도나 증여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도 증자, 감자, 합병 등 다양한 자본거래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장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율('24.1.1.이후)

거래시장 구분	증권거래세 세율	농어촌특별세 세율	거래되는 주권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시장)	0.03%	0.15%	상장주식
코스닥시장	0.18%	-	
코넥스시장	0.1%		
K-OTC시장	0.18%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	상장 및 비상장주식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기한
①	다음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 결제하는 경우 -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 - 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	한국예탁결제원	다음달 10일
②	① 외에 금융투자업자(증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다음달 10일
③	①·② 외의 방법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임

5 원천징수하는 세금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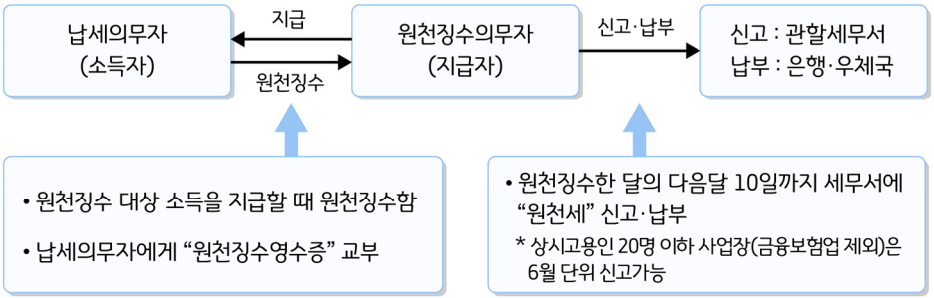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근무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공제 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당초 내야할 세금 이외에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목별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6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등에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 지분율 10% 이상&투자금액 1억원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 명세서	위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국조법§9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개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5백만원
  - (법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1천만원
  - (대상 확대)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제출대상)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봄
  - (과태료 금액)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45%의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부동산(권리 포함)을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포함)및 처분(해외 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거짓) 제출한 경우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 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3)]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확정신고 합니다.

*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3)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국내·해외 주택임대 관련 신고방법 비교]

<table>
<tr><th>구 분</th><th>국내주택</th><th>해외주택</th></tr>
<tr><td>과세요건
(주택수기준)</td><td colspan="2">
<table>
<tr><th>주택 수[1)]</th><th>월세</th><th>보증금</th></tr>
<tr><td>1주택</td><td>비과세[2)]</td><td rowspan="2">비과세</td></tr>
<tr><td>2주택</td><td rowspan="2">과세</td></tr>
<tr><td>3주택 이상</td><td>간주임대료 과세[3)]</td></tr>
</table>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또는 국내·해외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2) 해외주택 및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국내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월세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은 ’26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td></tr>
<tr><td>주택임대
사업자등록</td><td>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20년 귀속부터 미등록 가산세 부과</td><td>해당 없음</td></tr>
<tr><td>사업장 현황신고</td><td>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td><td>해당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td></tr>
<tr><td>신고방법
(수입금액 기준)</td><td colspan="2">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납부
<table>
<tr><th>수입금액</th><th>신고방법</th></tr>
<tr><td>2천만 원 이하</td><td>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중 선택</td></tr>
<tr><td>2천만 원 초과</td><td>종합과세(6~45%)</td></tr>
</table></td></tr>
<tr><td>해외부동산 투자
관련 명세서 제출</td><td>해당 없음</td><td>해외부동산의 취득·보유·운용·처분 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제출 의무(6월)</td></tr>
<tr><td>가산세</td><td colspan="2">
<table>
<tr><th>구분</th><th>가산세액</th></tr>
<tr><td>무신고 가산세</td><td>무신고 납부세액×20%(부정무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td></tr>
<tr><td>과소신고 가산세</td><td>과소신고 납부세액×10%(부정과소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과소신고한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td></tr>
<tr><td>납부지연 가산세</td><td>무·과소납부 세액×납부지연 일수×(22/100,000)</td></tr>
<tr><td>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td><td>(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주택임대 수입금액×0.2%(해외주택은 제외)</td></tr>
</table></td></tr>
<tr><td>「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미(거짓) 제출시 과태료</td><td colspan="2">
<table>
<tr><th>구분</th><th>과태료*</th><th>한도액</th><th>비고</th></tr>
<tr><td>해외부동산
(처분신고는 ’19년 과세연도분부터 시행)</td><td>• (취득·보유) 취득가액의 10%
• (투자운용) 운용소득의 10%
• (처분) 처분가액의 10%
• (자금출처) 미소명금액등의 20%</td><td>1억원</td><td>•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 등일 경우 신고 의무</td></tr>
<tr><td colspan="4">* ’19년 과세연도 이전분은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한도: 5천만원)</td></tr>
</table></td></tr>
</table>

III

기업경영과 세무

1. 절세와 탈세
2.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3.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4.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5.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6.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7. 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8. 대손금의 세무처리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10.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1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13.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6.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경비처리 등)을 빠짐없이 적용하고, 조세지원 제도(세액공제·감면, 준비금, 충당금)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절세를 위한 특별한 비결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납부를 줄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절세를 위해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및 국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세정지원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탈세(tax evasion)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만 과세 관청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인지하게 됩니다.

  설령, 잘못된 관행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의 일시 부과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산화된 신고자료가 성실하다고 신뢰하고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상대적으로 성실도가 낮은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항목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 표시방법

구 분	내용
주·임·종 단기채권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대여한 자금
단기대여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예, 관계회사)
가지급금	연중에는 가지급금으로 표시, 연말에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시점 서면-2021-법규법인-7996, 2023.2.7.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4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기업주의 사적경비를 비용처리 하면 법인세 외에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여 줄어든 세금보다 기업주 개인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법인 보유·임차 주택을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자임원 및 그 친족

유지·관리비 및 적정임대료 여부

구 분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여부	적정임대료 계상 여부
주택을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을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손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않음

5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과세관청에서는 손쉽게 인지하게 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	서면-2019-법인-1237, 2019.9.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임	

6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❶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❷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❸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❹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❺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❻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❼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❽ 위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에 사업장을 가진 자는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한정)

2)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 colspan="2">내용</th><th colspan="2">수도권</th><th rowspan="2">수도권 이외지역</th></tr>
<tr><th>과밀억제권역</th><th>기타</th></tr>
<tr><td>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6)</td><td colspan="2">5년간 50~100%
세액감면
(연간 5억원 한도)</td><td>50%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만)</td><td colspan="2">50% ~ 100%*
*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td></tr>
<tr><td colspan="3">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td><td>대체투자는 공제 허용,
증설투자는 공제 배제
(하단 참고)</td><td colspan="2">공제 허용</td></tr>
<tr><td rowspan="6">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td><td rowspan="6">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td><td rowspan="3">소기업</td><td colspan="2">의료, 도·소매업 10%</td><td>의료, 도·소매업 10%</td></tr>
<tr><td colspan="2">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td><td>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td></tr>
<tr><td colspan="2">제조업 등 기타 감면업종 20%</td><td>제조업 등 기타 감면업종 30%</td></tr>
<tr><td rowspan="3">중기업</td><td colspan="2" rowspan="3">출판업 10%</td><td>의료, 도·소매업 5%</td></tr>
<tr><td>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td></tr>
<tr><td>제조업 등 기타 감면업종 15%</td></tr>
</tabl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수도권 기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이외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

※ 2025.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한도 연간 5억원 적용(조특법 §6⑬)
※ 2026.1.1.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종전) 일반 50%, 청년·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100%, (개정) 일반 25%, 청년·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75%]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수도권 내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 감면 가능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혁신)·김제지평선·장흥 바이오 식품·북평(국가·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 담양 일반,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보령주포제2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64).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7. 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7년(3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04의24)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증설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조특법 §130)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 개시한 일반기업은 대체투자도 공제 배제(단, 정보통신장비 등만 가능)(조특법 §130 2항)

구분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1990.1.1. 이후 사업개시
일반기업	×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 (정보통신장비 등 ○)
중소기업		×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4)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조특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조특법§7)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인)(조특법§29의8) -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인)(조특법§29의8)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15~0.5%, 10% 한도)(조특법§7의4)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 + 보전액의 15%)(조특법§30의3)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0%)(조특법§19) * 2024.12.31. 이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는 15%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조특법§132)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법법§25) - 대손금 특례(법령§19)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특법§31)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법§72)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소득법§128) -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법법§64)

5)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 계	주요 내용
신규고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조특법§30의4)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75%, 그 외 50%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30) - 3년간 70% (청년 5년간 90%)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년)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불가)
재고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3) -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3) -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유지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30의3) -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임금증대	■ 근로소득 증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의4)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 세액공제

6) 시설투자 세제지원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세액공제</td><td>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사업용 외) 유형·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 (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10%, 기본공제의 2배 한도]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7)</td><td>10(12)</td><td rowspan="4">10</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8)</td><td>12(14)</td></tr>
<tr><td>국가전략기술사업화*</td><td>15</td><td>15</td><td>25</td></tr>
<tr><td>반도체 기술**</td><td>20</td><td>20</td><td>30</td></tr>
</table>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이며, '23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27.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적용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기술에 대해서는 5%p 상향('25.1.1.이후 투자분부터)

• 국가전략기술관련과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
* 국가전략 : 7개분야 71개 기술 지정(조특령 별표7의2)
신성장·원천기술 : 14개분야 270개 기술(조특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 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신성장)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td></tr>
<tr><td>기타 조세 지원</td><td>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 §29)
-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28의4)
* 에너지 절약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td></tr>
</table>

7) R&D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분	내용
세액공제 (조특법 §10)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그 밖의 경우) 당기발생액 20%(중소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25%)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40%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그 밖의 경우) 당기발생액 30%(중소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35%) + (당기 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중소) 당기발생액× 25% · (중소 유예기간 종료 후) 당기발생액 × (1~3년 20%, 4~5년 15%) · (중견) 당기발생액 × 8% ·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50%, 2%한도 * 증가분방식 : (당기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기타 조세지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조특법 §10의2)

8) M&A 세제지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분	내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1)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2)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4)

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96의3)

제도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요건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④ 사행행위업 등 조특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공제금액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 그 외 사업자는 50%

공제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4년 인하분 → '25.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7 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제도개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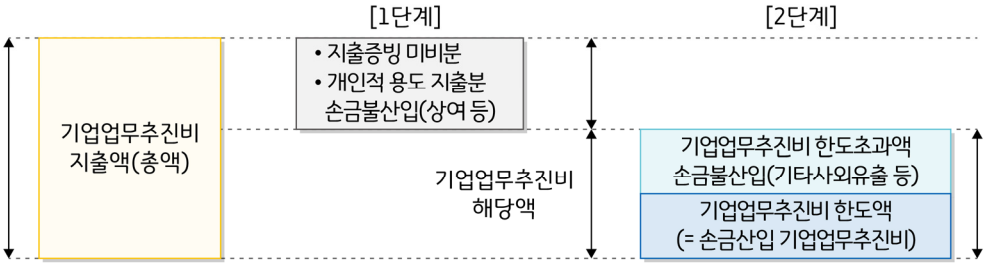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주주·출자자나 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과 지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귀속시기와 평가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하고 현물접대비는 장부가액과 판매가 중 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평가*

* 원가 500, 판매가 600원의 상품제공 시 기업업무추진비는 600원 + 60원 = 660원으로 평가

참고1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구 분	내 용	업무관련	지출상대방	손금인정여부
기업업무추진비	접대행위에 의해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업무관련	특정인	한도내 손금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의 구매의욕 고취		불특정다수	전액 손금
판매부대비용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지출		특정인	전액 손금
기부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의 증여	업무무관	특정인	한도내 손금

참고2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액

①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②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③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①의 한도액에 ②, ③의 한도액을 가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위 한도액의 50% 적용하고 정부출자기관은 70% 적용)

①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 기본금액 + Ⓑ 수입금액기준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frac{\text{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10%)

일반수입금액 적용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적용률
범위	적용률	
100억원 이하	0.3%	일반수입금액 적용률의 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 초과액 ×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 초과액 × 0.03%	

②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와 Ⓑ중 적은 금액

- Ⓐ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③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와 Ⓑ중 적은 금액

-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

8 대손금의 세무처리

제도개요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들 중 거래처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자산성을 상실하여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합니다.

대손금의 범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②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④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⑤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손사유

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손사유별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금의 귀속시기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결산조정사항)과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대손사유별 대손금의 귀속시기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및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일정한 사유(법칙 §10의4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등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⑦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요건·기준>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미작성 : 1천5백만원(500만원*)까지 인정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참고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 개요

구분	법인	개인 사업자
대상 사업자	모든 법인	복식부기 의무자
제도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차량	대상 사업자가 소유·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 전용자동차 보험	•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부인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을 안분하여 일할 계산한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 ※ 개인사업자는 전문직 종사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가입의무 有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업무용승용차가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전액 손금부인	
운행일지 작성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초과인 경우 ⇒ 1,500(500)만원 초과금액을 비용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하며,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 업무사용비율: 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감가상각비·임차료 한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연간 800(4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내용연수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의무화	
처분손실	연간 800(400*)만원까지 손금산입하고 초과금액은 이월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부실제출 시 손금산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22년부터 적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 서면-2020-법인-5933, 2021.2.26.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10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개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고

내국법인은 아래 과세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방식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 단위로 적용가능합니다.

- 투자포함방식 : [기업소득×70% - (투자금액 +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지출금액)]×20%
-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15%-(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의9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1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발기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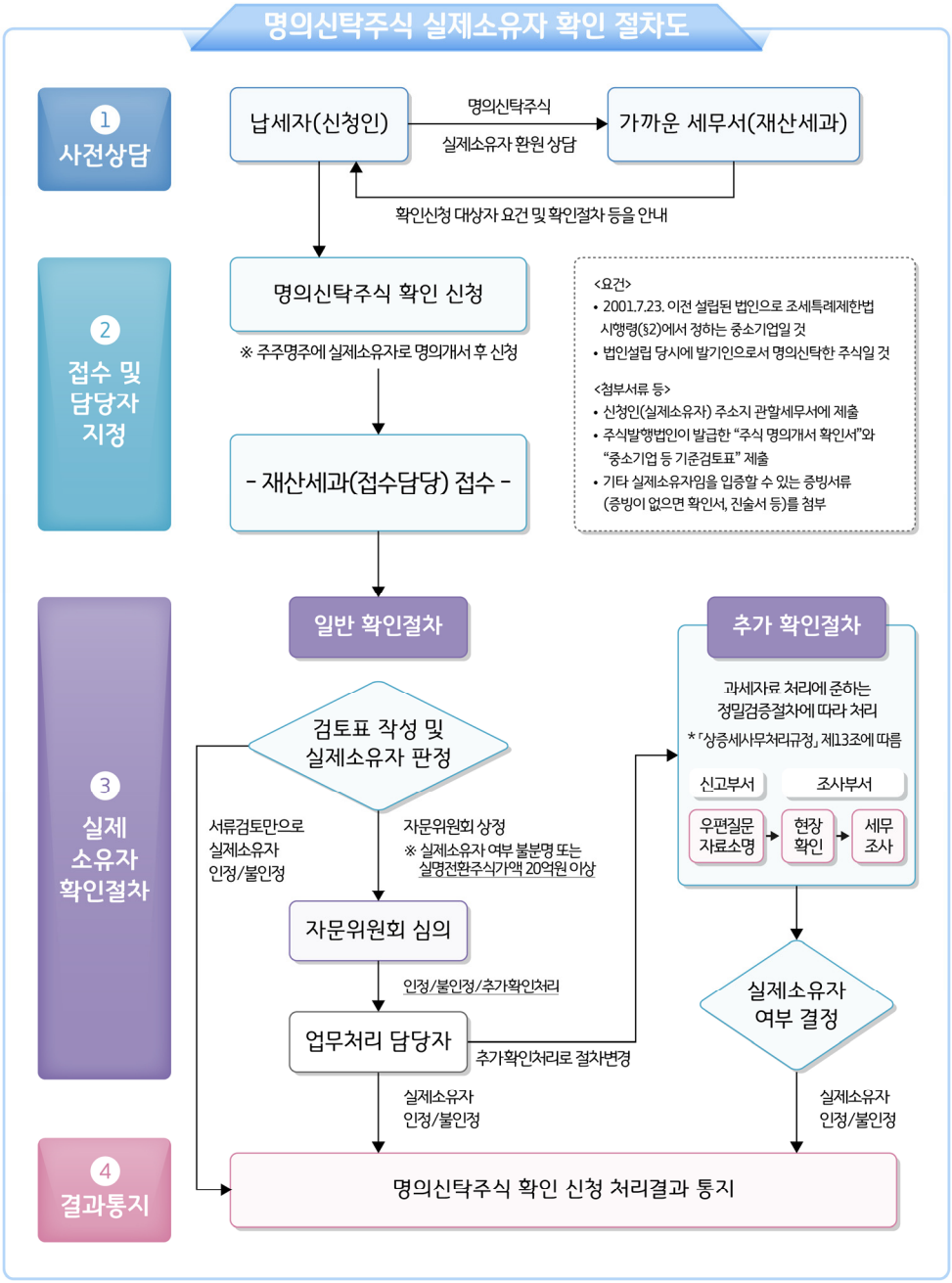

※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원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①1나2)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 5%(20%, 50%)) × (주식보유비율 – 0%(5%, 10%))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4.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5.6.30.)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①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②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2단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40%) 초과여부 확인

① 수혜법인의·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②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③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④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 총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 그 비율이 30%*(중견 40%·중소기업 50%) 초과 여부 확인
* 일반기업 특수관계매출비율 20% & 매출액 1,000억원 초과 포함

30%(50·40%)초과 ↓ 이하 → 과세제외

3단계 수증자 확정 [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② 그 친족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견·중소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3%(10%)초과 ↓ 이하 → 과세제외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① 세후영업이익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중견 20%·중소기업 50%)
* ① 및 ② 산정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감안하여 계산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text{수혜법인 총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 \times 100$$

③ 수증자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 0%(중견 5%·중소기업 10%)
④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⑤ 증여의제이익 산정 : (① × ② × ③) - ④
- 주식 직·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13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4년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5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개시사업연도의 월 수×12]×3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제도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ⅰ)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조특법§104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 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서면-2024-법인-1062, 2024.10.10.
주주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47, 2020.12.24.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 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신고내용

신고시에는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미·과소신고시 미·과소신고 금액의 10%(10억원 한도), 미·과소신고한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법인세 · 소득세 신고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6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규모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33~35)

보고서 종류·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 개별기업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및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전체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관계회사 목록 및 주요 사업내용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해당 과세연도에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①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액 500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②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국내 관계회사*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주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 원

IV

가업상속공제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3. 가업승계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4.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금액(단,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1) 가업상속재산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text{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text{가업법인 주식가액} \times \frac{(\text{총자산가액} - \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

2) 사업무관자산

① 법인법 §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비사업용토지 등)

② 법인령 §49【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③ 법인령 §61【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하며, 이때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피상속인 요건(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재직한 경우) 또는 전체 사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일 것

②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망시 제외)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 취임할 것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③의 요건 충족 시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 : 5년]
(가업 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 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이상 처분 제한
(고용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90% 이상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90% 이상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에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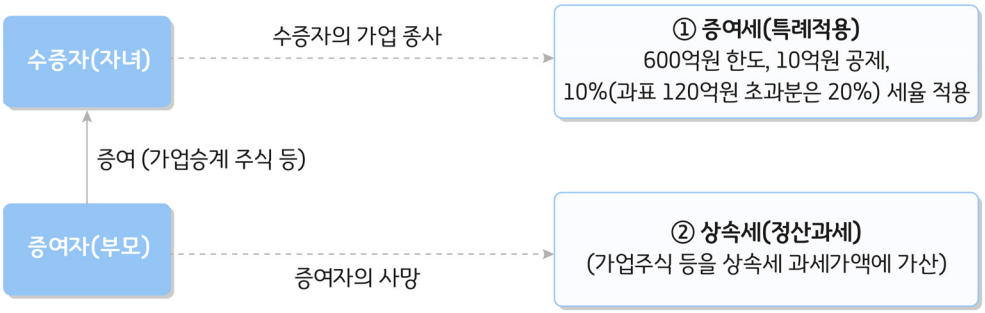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일 것

②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일 것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수증자는 사후관리 의무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 : 5년]
①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 변경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업종 변경하는 경우 제외
③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④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승계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50%)	과세표준 120억 이하 : 10% 120억 초과 : 20%
	피상속인 요건 (증여자)		최대주주& 지분40%(상장20%)이상 10년 보유	
	사후관리	기간	5년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5년 평균 90% 유지	없음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 거치 10년 납부) 적용	15년 적용

3 가업승계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23년 상속·증여분부터)

○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을 상속·증여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 적용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가업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신청방법 : 신고기한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 상당)를 제공하여야 함
- 사후관리 : 지분유지 요건 적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90% → 70%), 업종유지 요건 면제

① 가업상속의 납부유예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 공제 준용
- 납부유예 가능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frac{\text{가업상속재산가액}}{\text{총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 납부유예 가능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frac{\text{가업주식 가액}}{\text{총 증여 재산가액}}$

4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방국세청에서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컨설팅」을 2022.9.1.부터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제외업종 :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

신청방법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를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매년 7.1.~7.31.)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서식 다운로드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컨설팅 진행절차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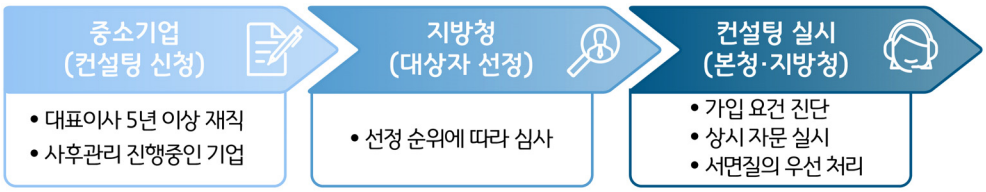

V

세정지원

1.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
2.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3.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5.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1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란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3년부터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기존의 세정지원 대상이었던 혁신성장 기업과 신산업 분야 및 구조조정기업 외에 교역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확대 중소기업과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지원대상		2025년 추가
• 혁신성장·뿌리기술·소부장 •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등	+	• 투자확대 중소기업 : 외형 1,500억원 미만 & 투자계획서 제출 • 점프업 선정(중기부)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은

모든 지원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 우선 처리,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지원과 함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등 경영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원대상(뿌리기술 전문기업과 소부장 전문기업, 수출기업, 신산업분야, 신기술·녹색기술 인증기업)에게만 제공하던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모든 지원 대상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국세청에 구조조정 중소기업상담 전담반을 설치하여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쟁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정지원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공지사항에서 "미래성장"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관점에서 분석하여 인용된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잘못된 과세를 유발하는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세법정보를 찾거나 상담을 원하시나요?] → [국세법령정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및 이용방법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⑰ 법 제 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 * 접속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신청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 세액공제 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①연구개발비 명세서 ②연구개발 보고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제도 개요 및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 제도의 효력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8.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신청방법 및 컨설팅 제공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와 특정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신청방법 및 혜택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검색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클릭

공제·감면 컨설팅의 혜택은

컨설팅 받은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 경우

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VI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법인세 세율 인하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3.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4.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5.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
6. 법인세 중간예납 적용제외 법인 기준
7.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8. 연결법인 간 결손금 정산 예외 요건 완화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대상 확대
10.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11. 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정
12.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15.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정비
16.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1 법인세 세율 인하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세율 인하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과세체계 ○ 세율 및 과세표준	■ 법인세율 인하 ○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종 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개 정: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의 감소 등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신 설>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분할차익에 포함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해당금액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 ○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얻은 이익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이익 및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지분비율 변경으로 인한 이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적용시기) '24.1.1.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3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마련(수익범위 명확화)

종 전	개 정
■ 수익이 범위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ㅇ <추 가>	■ 임직원 할인 금액을 수익에 포함 ㅇ (좌 동) ㅇ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마련(손비범위 명확화)

종 전	개 정
■ 손비의 범위 ㅇ 인건비 - <추 가>	■ 임직원 할인 금액을 손비에 포함 ㅇ (좌 동)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 - 법인(사업자)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할인금액 상당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4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 ㅇ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추 가>	■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철도시설관리권 * 내용연수(30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ㅇ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 (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적용시기) '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5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

공동경비 배분 기준 및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 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 기준	■ 공동경비 배분기준 합리화
ㅇ ❶~❹ 중 선택, 미선택시 ❸ 선택으로 간주 ❶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❷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❹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ㅇ (좌 동)
<신 설>	ㅇ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❶~❷ 중 선택, 미선택시 ❶ 선택으로 간주 ❶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❷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 공동경비 분담 적용 손비 범위	■ 공동소유자산을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
ㅇ 조직·사업 등의 공동 운영·영위에 따른 손비	ㅇ (좌 동)
<추 가>	ㅇ 자산의 공동 운영에 따른 손비 * 공동소유 자산에 대한 구체적 공동경비 배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적용시기) '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세 중간예납 적용제외 법인 기준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적용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제외 법인 기준 ㅇ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120조의25
(적용시기) '2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규정 미비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ㅇ (산출세액) ❶+❷ ❶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❷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추 가>	■ 산출세액에 투상세 가산 명확화 ㅇ (산출세액) ❶+❷+❸ ❶ (좌 동) ❷ (좌 동) 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22

8 연결법인 간 결손금 정산 예외 요건 완화

연결납세 제도 실효성 제고

종 전	개 정
■ 결손금에 대한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ㅇ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 ㅇ 주주*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결집단 내 주주인 연결법인은 제외 - (기한)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	■ 정산 예외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기한) 신고기한 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2
(적용시기) '25.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대상 확대

여행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	■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ㅇ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운영 사업자	ㅇ (좌 동)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ㅇ (좌 동)
<추 가>	ㅇ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영위 사업자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적용시기) '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안정적 공급망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
ㅇ 익금불산입 대상 -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ㅇ (좌 동)
ㅇ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등 -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	ㅇ 제외대상 조정
<단서 신설>	■ 다만,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적용시기) '25.2.28.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정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종 전	개 정
■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 ㅇ 소비성서비스업 ㅇ 금융업(중견기업) ㅇ 보험 및 연금업(중견기업) ㅇ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추 가>	■ 제외업종 등 추가 ㅇ (좌 동) ㅇ 부동산임대업 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❶~❸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❶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적용시기) '2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2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종 전	개 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 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년 100%+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종 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초기 3년 간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50%

구분	기본 감면		추가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신 설>

개 정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ㅇ (좌 동)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 → 25%
  (청년 등) 5년간 100% → 75%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100%

구분	기본 감면			추가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ㅇ (감면한도) 연간 5억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시기) '25.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간 감면율 적용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1」(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 정

■ 점감구조 도입

ㅇ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2]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9[3]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0[4]	25	

1」(좌 동)

2」(~3년)7.5%, (4년~)5%

3」(~3년)9%, (4년~)6%

4」(~3년)20%, (4년~)1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15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정비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종 전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ㅇ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추 가>

개 정

■ 북한이탈주민을 우대대상에 추가

ㅇ (좌 동)

ㅇ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8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국적선박 확충 유도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ㅇ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 이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Σ(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ㅇ (좌 동)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10,000톤	11원
10,000~25,000톤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ㅇ (제출서류) 요건명세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좌 동)
<추 가>	- 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 계획서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

"이 책자는 2025년 3월 현재 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정보 중 최고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예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최고 경영자의 현명한 세무관리

발 행 일 자	2025년 3월
발 행 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감 수	법인세과장 황 동 수
집 필 · 편 집	행정사무관 황 진 하
	국세조사관 신 연 주
	국세조사관 전 현 혜
	국세조사관 김 현 섭